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334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준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8.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C은 2012. 1. 27. 주식회사 D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고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주식회사 D로부터 2013. 3. 20. 주식회사 E를 거쳐 2014. 6. 19.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 및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86168호로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404,400원 및 그 중 2,745,262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2021. 11. 17. 기준 원리금 합계 12,845,384원 및 그 중 원금 2,745,262원에 대한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은 부(父)인 피고와 2021. 6. 15. 사망한 모(母)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3/9 지분) 및 G, H(C과 같이 모두 각 2/9 지분)과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이 2021. 8. 5. 이에 관하여 전부 피고가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 협의일자는 망인이 사망한 2021. 6. 15.로 기재되어 있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9. 피고 앞으로 2021.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1. 8. 5.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I은행과 J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원금 8,131,262원 및 이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한 대출원금 2,745,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적용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기여분이 더 있다거나 C의 구체적 상속분이 감소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가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전지급의 성격을 갖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에게 명의신탁 된 피고 소유라는 주장

가) 적용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1990.부터 2020.까지 합계 12,812,750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외에 가정주부로서 3명의 자녀를 돌보며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였고, 피고는 1990. 7. 15. 퇴직수당 8,852,390원을 수령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게의 소득을 책임졌고 그 이후에는 월 740,000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1999. 7. 2. 31,000,000원과 1999. 9. 28. 40,000,000원이 각 출금되어 2000. 1. 22.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아파트 M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 매매대금에 보태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망인이 2006. 10. 23. L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계약금 30,000,000원은 피고 명의 예금계좌, 중도금 없는 잔금은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 각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망인은 위 매도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C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역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피고의 기여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뿐 아니라 그 이전에 취득한 L아파트 모두 피고가 아닌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수차례 설정되었으나, 한편 망인의 소유이던 2019. 12. 12.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전부가 피고의 출연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얻은 소득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인의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소득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주된 출연이라 하더라도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로소득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대여 또는 증여하였을 수도 있다.

(6)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줄곧 피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계속 사용되었다(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7)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8) 나아가 가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때 채무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입증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과 함께 오랜 부부생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을 반영하여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6/9 지분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부당하지도 않다.

2) 피고가 선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는 C의 부친으로서 C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밀접하게 소통하는 가족으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선의인 수익자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 피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취소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 지분(=상속재산인 1/2 지분×C의 상속비율 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별지